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른 유의사항

고우리 | 서원코리아 관세법인 관세사

EREPORT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른 유의사항



고우리
서원코리아 관세법인 관세사



WORLDWIDE

US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시작으로 EU, 미국, 중국 등의 폭넓은 FTA 확대를 추진하여 최근에는 메가(Mega¹)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발효되어 거의 모든 교역국가와는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양한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 방식은 협정별로 상이하여 중소기업 등 기업실무자는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FTA를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발효된 RCEP 및 이스라엘, 캄보디아 협정에서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을 선택하여 원산지증명 방식을 활용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실무자 입장에서 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 기존의 양자 FTA가 아닌 대규모 경제권을 가진 국가 여럿이 모여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개방화의 정도에 따라 공동시장에 분류되기도 한다.

1 서론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시(수입통관시)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임을 확인하여 이를 서류로써 증명하면 그 서류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당국에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미주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인도·중국 등은 기관발급을 선호하고 있고 EU의 경우 제한적 자율발급(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또는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2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크게 기관 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발급 방식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²을

말하며, 자율발급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여 발급하는 것³을 말한다.

[협정별 원산지 발급방식]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신력이 높아 우회수입방지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절차 신속·편리 발급비용 절감 통관절차 간소화 계약당사자 자율책임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고와 증명서 발급 절차 중복 절차 복잡, 시간·비용 증가 요식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위증명 가능성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한-호주 FTA: 호주만 기관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EU, 한-영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 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RCEP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이스라엘 : 상품의 가치가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인 경우 원산 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캄보디아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FTA포털 참고하여 저자작성

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3 각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현재 발효된 21개협정에 따른 협정별 발급방식 및 발급서식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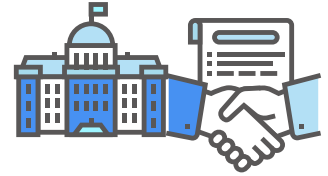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식]

협정	기관발급	자율발급	발급서식
칠레		0	통일서식
싱가포르	0		별도서식
EFTA		0	송품장
아세안	0		통일서식(AK)
인도	0		통일서식
EU		0	송품장
페루		0	통일서식
튀르키예		0	송품장
미국		0	자율서식/권고서식
호주	0(호주만 가능)	0	자율서식/권고서식
캐나다		0	통일서식
중국	0		통일서식
베트남	0		통일서식
뉴질랜드		0	송품장/권고서식
콜롬비아		0	통일서식
중미		0	통일서식
영국		0	송품장
RCEP	0	0	통일서식
이스라엘	0	0	통일서식/송품장
캄보디아	0	0	통일서식
인도네시아	0		통일서식

4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유의사항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1) 발급기관 확인 및 의무사항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⁴이며 증명서 발급 기관은 발급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때는 지체없이 동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관세청장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다른 증명서발급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은 협정에서 정하는 자 및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⁵받을 수 있는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5 관세사 등 위임을 받아 신청인으로 인정은 가능하지만, 관세사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위임장 제출해야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품목의 HS CODE 확인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상에 HS CODE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국에서 하나,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입국의 HS CODE도 반드시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동일물품에 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를 경우 수출신고시 수출시 사용하는 HS CODE로 수출신고를 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에는 수입국의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입시 HS CODE로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가능하다.

- ① 수입신고필증
- ② 품목번호 확인서
- ③ 사전심사결정서
- ④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⑤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서류는 최초 발급신청시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동일 물품에 한하여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생략 가능함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국의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하되, 수출자는 수입국세관에서 수출국의 HS CODE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시에는 원산지결정 기준 불충족에 따른 특혜관세가 배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⁶

6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관세청지침(2020.08.04.) 참고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종류	제출서류
신규발급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시 제출할 수 있음) ④ 원산지소명서(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도 등도 제출)
재발급	① 재발급신청사유서
정정발급	①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제출) ②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③ 정정사유 입증서류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기 확인

원산지증명서는 선적되는 특정 화물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화물이 선적되는 시기에 맞춰서 일정기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 전, 선적시, 선적 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나,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발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상에 선적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야 한다.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및 소급발급 문구]

협정	발급시기	스탬프
아세안	선적전 ⁷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내(선적일 포함)	ISSUED RETROACTIVELY
인도	선적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이내(선적일 포함)	ISSUED RETROSPECTIVELY
베트남	선적전,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내(선적일 포함)	ISSUED RETROACTIVELY
중국	선적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이내(선적일 불포함)	ISSUED RETROACTIVELY
RCEP	선적이 완료되기 전(선적일포함)	ISSUED RETROACTIVELY
이스라엘	선적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이내(선적일 불포함)	ISSUED RETROSPECTIVELY
캄보디아	선적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이내(선적일 포함)	ISSUED RETROACTIVELY
인도네시아	선적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이내(선적일 포함)	ISSUED RETROACTIVELY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1)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자율발급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에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서명권자는 대표자일수도 있고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서명권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관리하고 있는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서명카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제출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추후 원산지 검증시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시 증빙서류로서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하는 서류이다.

7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적 전 발행된 원산지를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불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적후에 신청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발급가능하지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입증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가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자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의 검증이 집중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5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21개협정, 59개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황으로 각 협정별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실무자들은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 발급방식에 맞춰 활용하여야 하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앞서 몇 가지 준비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수출상대국이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인지 확인하고 둘째, 해당이 되는 국가라면 수출물품의 HS CODE를 미리 확인하여 수입국의 FTA관세혜택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한지 여부를 같이 확인한다.

셋째, 관세실익이 있는 경우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빙서류(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 공정도) 등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 넷째, 수출 물품의

발급시기에 맞춰 발급하여야 한다. 기관발급의 경우 선적일과 발급일자에 따라 소급발급문구 등 필수기재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맞춰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과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이 체결된 상황으로 수입국에서 해당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당 협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발급의 경우 통일 서식이 아닌 필수기재항목만 있으면 인정되는 자율서식이 많기 때문에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검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다. 즉 5년 내에 FTA 원산지검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는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FTA 사후검증에 잘 대비하여야 한다.